〈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 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 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u>
<u>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u>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 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 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 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서 울 특 별 시 장



등 록 번 호	20240169	홈페이지
최초 등록일	2024.01.23	
최종 등록일	2025.03.28	geogungchans.com

[거궁찬] 정보공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거궁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소 재 지: 서울 서초구 논현로17길 19 201호

 ■대표전화번호:
 1533-9191
 ■대표e-mail:
 ggc0001@naver.com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1.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 가맹사업 연혁
- 3. 가맹사업 업종
- 4. 바로 전 3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5.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 6. 거궁찬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10. 광고·판촉지출 내역
- 11. 가맹금 예치기관
- 12.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3. 형(形)의 선고

IV. 가맹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2. 영업 중의 부담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3. 경영활동 자문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WⅢ.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3. 교육 · 훈련의 주체
-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 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개 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 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 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 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 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거궁	착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17길 19, 201호(양재동, 덕산빌딩)				
I = = = =	법인 설립	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주)거궁찬스	2023.11.22		2023.11.24	김성국	1533-9191		02-573-8123
	법인등록번호	11011	1-8798550 사업자등록		- H번호	377	-86-03328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가맹본부	(주)거궁찬스	거궁찬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17길 19, 20 (양재동, 덕산빌딩)		
특수	김성국(산내이산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특수 관계인 (임원)	XU SHANJUAN(사내이사) 김정자(사내이사) 김정애(감사)	김성국	1533-9191	02-573-8123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거궁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서이천로 945		
	(주)거궁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계열회사		김정애	1533-9191	02-573-8123	
	법인등록번호	134411-0072544	사업자 등록 번호	642-86-00676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 · 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 · 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 · 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주)거궁	거궁찬스	2024.02.07.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서이천로 945	김성국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거궁찬	반찬전문점
상 호	거궁찬 00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かるな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		없 음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022년						
2023년	75,490	65,122	10,368	0	-19,633	-19,631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사업경력	
근단의구	ŸĬ □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김성국	2019.03~현재	(주)거궁 감사	감사업무
		2023.06~현재	(주)거궁푸드시스템 사내이사	경영지원
		2024.12~현재	(주)거궁찬스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19.03~현재	(주)거궁 사내이사	경영지원
	XU SHANJUAN	2023.06~현재	(주)거궁푸드시스템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23.11~2024.12	(주)거궁찬스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가맹사업 관련 임원		2023.11~현재	(주)거궁찬스 사내이사	경영지원
판던 임원		2015.05~현재	거궁광주점 대표	한식업
		2016.10~현재	(주)거궁 감사	감사업무
	김정자	2023.06~현재	(주)거궁푸드시스템 사내이사	경영지원
		2023.06~현재	거궁부천점 대표	한식업
		2023.11~현재	(주)거궁찬스 사내이사	경영지원
	김정애	2024.11~현재	(주)거궁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23.06~현재	(주)거궁푸드시스템 감사	감사업무

2023.11~현재	(주)거궁찬스 감사	감사업무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24	임원-	수(명)	지의스(명)
시점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3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 바로 전 3 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거궁/거궁찬스	가맹사업 경영	2024.02 *해당 가맹사업을 다른 회사에 인도함	거궁찬스(등록번호: 20240169)라는 브랜 드의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귀하가 당사의 『거궁찬』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 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거궁찬	가맹점운영권 내에서 사용	출원 (2025.01.08)	출원번호 (21류)4020250003551	김성국	출원 중
거궁찬	가맹점운영권 내에서 사용	출원 (2025.01.08)	출원번호 (42류)4020250003592	김성국	출원 중
거궁찬	가맹점운영권 내에서 사용	출원 (2025.01.08)	출원번호 (43류)4020250003594	김성국	출원 중
거궁찬	가맹점운영권 내에서 사용	출원 (2025.01.08)	출원번호 (40류)4020250003574	김성국	출원 중
거궁찬	가맹점운영권 내에서 사용	출원 (2025.01.08)	출원번호 (35류)4020250003564	김성국	출원 중
거궁찬	가맹점운영권 내에서 사용	출원 (2025.01.08)	출원번호 (29류)4020250003561	김성국	출원 중
거궁찬	가맹점운영권 내에서 사용	출원 (2025.01.08)	출원번호 (18류)4020250003549	김성국	출원 중
거궁찬	가맹점운영권 내에서 사용	출원 (2025.01.08)	출원번호 (30류)4020250003563	김성국	출원 중
거궁찬	가맹점운영권 내에서 사용	출원 (2025.01.08)	출원번호 (16류)4020250003545	김성국	출원 중
거궁찬	가맹점운영권 내에서 사용	출원 (2025.01.08)	출원번호 (38류)4020250003567	김성국	출원 중
거궁찬	가맹점운영권 내에서 사용	출원 (2025.01.08)	출원번호 (39류)4020250003568	김성국	출원 중

당사가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소유권자로부터 현재 출원상태로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알리겠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 저작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2. 가맹사업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거궁	거궁찬스	김성국	가맹사업 미개시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서이천로 945
(주)거궁찬스	거궁찬스	XU SHANJUAN	가맹사업 미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17길 19, 201호 (양재동, 덕산빌딩)
(주)거궁찬스	거궁찬	김성국	가맹사업 개시 예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17길 19, 201호 (양재동, 덕산빌딩)

3. 가맹사업 업종

영업표지	업종		
71 7 5L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거궁찬	기탁도소매	즉석반찬 (반찬, 국, 찌개), 밀키트, 도시락	

4. 바로 전 3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717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0	0	0	0	0	0	1	0	1
서울	0	0	0	0	0	0	1	0	1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_	_	_	_	_	-
2022	-	_	-	_	-	-
2023	-	-	-	-	-	-

- 6. 거궁찬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 당사는 『거궁찬』 외 기타 가맹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기		·의 연간 평	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말 기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평균 (상한)		평균 ((하한)	비고
	1001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m²당	하한	면적 3.3m²당	
전체	0	해당 없음						5곳 미만
서울	0	해당 없음						5곳 미만
부산	0	해당 없음						5곳 미만
대구	0	해당 없음						5곳 미만
인천	0	해당 없음						5곳 미만
광주	0	해당 없음						5곳 미만
대전	0	해당 없음						5곳 미만
울산	0	해당 없음						5곳 미만
세종	0	해당 없음						5곳 미만
경기	0	해당 없음						5곳 미만
강원	0	해당 없음						5곳 미만
충북	0	해당 없음						5곳 미만
충남	0	해당 없음						5곳 미만
전북	0	해당 없음						5곳 미만
전남	0	해당 없음						5곳 미만
경북	0	해당 없음						5곳 미만
경남	0	해당 없음						5곳 미만
제주	0	해당 없음						5곳 미만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거궁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0	0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거궁찬』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에서 바로 전 사업 년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및 판촉비를 가맹점 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본 정보공개서의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8. 광고 및 판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및 판촉	기타	연중	_	_	_	

11. 가맹금 예치 기관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부서	주소	전화번호
кв жь	양재남종합 금융센터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79	02-575-7345

- 귀하는 가맹금 예치금액을 당사에서 교부한 예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맹계약 후 다음날까지 예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국민은행을 방문하시어 예치가맹금을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국민은행장 명의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국민은행(홈페이지 및 전화)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주)SGI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상품명	프랜차이즈보증보험	
보험인(보험회사)	㈜SGI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거궁찬스	
피보험인(보험금수령인)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 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u>민사소송</u> 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u>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u>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거궁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 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또는 보증보험)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또는 보증보험)	계약체결시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최초가맹금 내역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11,000	계약체결일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계약금 성격의 금전	
교육비 (가맹점주 입문교육 및 실습 교육)	3,300	계약체결일	훈련시작 1일 전 계약해지	훈련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합계	14,300				

2) 보증금의 세부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비용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3,000	계약 체결일	계속가맹금 및 계약종료후의 조치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미지급	1.계약종료 시 잔존 채무액을 공제한 후 상호, 서비스표등 당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의 철거가 완료된 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2.별도의 이자가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귀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하여 예치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중 1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11,000	부가세 포함
교육비	3,3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3,000	부가세 없음
합계	17,300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포함)

						(단귀· 선턴, <u>구기</u> 계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10 평(33㎡)	면적 3.3㎡당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23,100	2,310	별도 계약	공사 착수 전 계약취소	내부공사
주방설비 및 쇼케이스		27,500	2,750	별도 계약	제작 전 계약취소	점포 실정에 따라 변동
간판	별첨2.	7,700	_	별도 계약	공사 착수 전 계약취소	점포 실정에 따라 변동
초도물품	거래상대방 참고	7,700	_	별도 계약	제작 전 계약취소	
POS		-	_	별도 계약	제작 전 계약취소	점포 실정에 따라 변동
DID		-	_	별도 계약	제작 전 계약취소	점포 실정에 따라 변동
계		66,000				*현장 실측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운영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매장규모 및 물가인상, 디자인의 변동 등 사정에 따라 금액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허가, 인터넷 및 전화개설,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정화조공사, 전면유리 및 샤시공사, 어닝, 소방공사, 전기증설공사, 상하수도공사, 가스공사 등은 별도로 실비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예: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디자인 및 설계에 대한 노하우 전수의 대가로 3.3㎡(1평) 기준으로 일금 삼십삼만원(330,000원, 부가세 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단,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해서는 당사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궁찬』 영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당사가 규정하는 콘셉트를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5)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 등 귀하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100 만원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200 만원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300 만원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1) 가맹점 사업자가 점포 위치를 선정하여 오는 경우 기존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역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규 가맹점의 위치를 허 가함. 만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입지 변경 권유함
가맹 희망자	2) 가맹점 사업자가 점포 입지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현장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의 최 종 결정
	3) 가맹본부가 점포입지를 선정해 놓은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입지 안내 → 가맹희망자와 담당자가 현장 확인 → 가맹희망자의 최종결정

- 당사는 가맹희망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가맹점의 입지에 대해 조언을 하며, 입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합니다. 이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직원에게 가맹점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가맹희망자는 본인의 책임과 권한으로 가맹점 입지(제3자와 체결한 점포, 장비, 동산의 매매 및임대차계약 등)를 선정하였으므로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격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의 개점 전 교육과정 이수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만 20세 이상일 것 - 위생교육 수료자, 보건증 소지자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 만 19세 이상일 것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보건증 소지자일 것

- 귀하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가맹점운영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 『거궁찬』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물품리스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물품내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 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총매출액의 1.65%	익월 5일	후불로 반환 없음		전월에 대한 대가 가맹점의 매출산정은 1일~말일 부가세포함 총매출액 (배달매출포함)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광고별로 분담	추후협의	미 시행 시 반환	광고 시행 후	정보공개서 p.47 참고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추후협의	미 시행 시 반환	판촉 시행 후	정보공개서 p.47 참고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없음		VI.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필요시 협의	설치 전 100%	없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수시 및 정기 교육비	가맹본부	필요시 협의	교육개시전 일 완납	없음		교육 필요시 지급	
특별 교육비(파견)	가맹본부	교육에 따라 다름	교육개시전 일 완납	없음		교육 필요시 지급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협의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없음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상품/ 원부재료 마진	가맹본부	도매가격 이상의 초과 이윤	주문시	해당없음	사용대가 의지급	개별상품별 마진 상이	
POS사용료	협력업체	협의	업체와 협의	해당없음	사용대가 의지급	점포상황에 따라 변동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없음		일체의 금전 지급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없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문서기록과	분기별 1회	문의: 가맹본부	
세포선니	실제량 비교를 통한 재고 관리	(변동가능)	군의·기정군구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분기별 1회	문의: 가맹본부	
	조사 실시	(변동가능)		
매뉴얼 준수	교육 및 점포 운영매뉴얼 준수여부	수시	문의: 가맹본부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당사의 직원을 통하여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품목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의 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 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하며, 당사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사가 정보공 개서 작성을 위해 귀하의 연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갱신수수료는 최초

가맹비의 50%인 오백오십만원(5,500,000원/부가세 포함)이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수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당사가 대체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
 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기간, 계약해지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거궁찬' 가맹점을 운영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도 예정일 2 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 양도 등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가맹본부'는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거절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 가맹점 운영권이 양도되는 경우 그 양수인(이하'양수인'라 한다)은 '가맹점사업자'의 본 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는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양수인'은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 상속인에 대해서는 일부 최초가맹금(가맹비+계약이행보증금)이 면제된다. 단, 교육비는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금 삼백삼십만원(3,300,000원, 부가세 포함)을 '가맹본부'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거궁찬』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부여받았던 가 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거궁찬』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지체없이 중단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계약해지 및 종료 후 7일 이내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운영에 관한 관계서류와 지원품목 등을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전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
 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거궁찬』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귀하는 당사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제/권유 기준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물품 및 상품을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사의 [거궁찬]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VAT포함)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매출액	비고
(주)거궁푸드 시스템	계열회사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 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별첨 4. 참조	②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1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취급상품 변동시 서면/POS로 공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주재료와 부재료는 가맹본부와 협의된 사항들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품 제공시 표준화된 구성과 품질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거궁찬 타 가맹점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제품 및 상품	기재된 상품은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제 3자 유통업체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
 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판매가를 정하여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별첨4. 상품명 및 판매가 참고)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 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철인 합중 검취 	가맹 본 부	계열회사	
거궁찬과 동일한 컨셉 및 노하우를 사용하는 반찬전문점 - 즉석반찬, 국, 찌개, 밀키트	거궁찬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거궁찬]의 입지상권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을 중심으로 물리적 장애 및 심리적 장애요인을 종합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음. 1. 물리적 장애: 4차선 이상의 도로(차량속도 30km), APT, 학교의 외벽, 하천, 고가도로, 산, 공원, 철도, 지하도와 같이도보 통행인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접근에 장애를 주는 것들을 구분. 2. 심리적 장애: 보행 시 위험을 느끼는 외벽, 경사도로(15~20℃) 이루어진 오르막길, 통행인이 한적 하고기타 요인들로 통행인의 심적인 부담을 주는 경계지점. 3. 사회,문화적 장애: 관습에 의한 사람들의 이동구획이지어지는 경향 구분. 4. 경제적 장애: 소득수준에 따라 이동이 구획되는 경향 구분.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특수상권	특수상권 내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 ※ '특수상권'이라 함은 대형할인매장, 종합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역사내, 지하상가, 공항, 호텔, 종합병원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 상권을 의미합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기관 입주, 아파트 입주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한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수요가 현저하게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 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 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 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 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 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 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재조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동안 기존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영업지역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영업지역 변경(재조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거나 동의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에게 배달 등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거궁찬』 영업

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원·부재료는 제외)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원·부재료는 제외)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 『거궁찬』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3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 →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 →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 →A	D-180 ~ D-90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 아니오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 ⑥ 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 →D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 기 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	D-180 ~ D-90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⑧ 제기하였습니까?	예→E , 아니오 →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D. 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E.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가맹계약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 9조 4항
·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제32조 1항)

- ▸ '가맹점사업자'가 제 21조 5항의 상품대금 및 제 15조 3항의 계속가맹금(Running Royalty) 등의 금전적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제 25조 3항의 매출정보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 19조 1항에서 규정한 '가맹본부'의 상품종류, 판매방법, 가격 및 서비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제 21조 2항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하거나 제 21조 3항의 자점매입 여부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 를 응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제 24조의 외부간판, 유니폼 및 영업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 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 21조의 7항 '가맹본부'가 공급한 공급품을 제 3자 또는 타 가맹점에 재판매 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훼손 및 변경, 양도, 영업상 신뢰 훼손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제 30조 비밀유지 의무 및 경업금지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제 15조 1항 가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 28조의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정기, 수시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제 19조 5항의 신메뉴 및 변경·보완된 메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에게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 21조 1항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 27조 6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판촉활동 시행에 반대하거나 비용 분담을 거부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 12조 1항의 가맹점의 구조 또는 설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승인없이 제 5조 1항의 가맹점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가맹점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허위사실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하거나, 브랜드통일성 및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운영매뉴얼 및 세부 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 · 기타 신의칙에 반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

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제32조 2항)

-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 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 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 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합의를 거쳐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절차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 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 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 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운영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에 대한 비용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양수인에게 양도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와 계약한 영업지역 내에서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따라서 상속을 제외한 대리행사 및 위탁 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양도 절차와 동일	- 교육훈련에 관한 이수 - 교육훈련비용 납부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권리의무	서면통지 및 승인	- 교육훈련에 관한 이수 - 교육훈련비용 납부
업무위탁	불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계약의 존속 기간과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자기(특수 관계인 포함)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동종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거궁찬과 동일한 컨셉 및 노하우를 사용하는 반찬전문점 - 즉석반찬, 국, 찌개, 밀키트, 도시락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 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본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거궁찬』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9:00 ~ 21:00	매주 6일 이상 월 25일 이상 (2월의 경우 24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할 수 없고 사전승인 요함 문의 : 가맹본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규정상 7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할 경우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
 에 가맹본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비정기적	본사 가맹관리팀	변동가능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비정기적	본사 가맹관리팀	변동가능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및 미승인된 사입품목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비정기적	본사 가맹관리팀	변동가능

∘ 당사는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됩니다.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맹점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및 영업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당사에서 지정하는 자가 상기 사항 점검이나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자신의 가맹점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거궁찬』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H	21 21 24	부담비율		HEL 71-1	–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대중매체	
전체 가맹기 행사 모집굉 가맹기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가맹 점의 행사 참여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100%	없음			
판촉 행사	전체행사	행사에 따라 차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측간 균등분담 원칙)		행사계획 공고 → 가 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거친 후 전체 가맹점	
	개별행사	없음	판촉비의 100%	가맹본부 사전승인	단독행사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가맹사 업법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을 받아 진행합니다.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
 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 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중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한 광고를 시행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광고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지급받은 금액, 광고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광고·판촉비용의 소모적인 낭비를 줄이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당사와 사전 협의 하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
 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40조 및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변심 등 상대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100 만원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200 만원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300 만원
가맹점 오픈 후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종료 직전 3개월의 평균로열티 * 잔여개월수

-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 의무 제36조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별로 각 사유에 대하여 금 삼천만원(30,000,000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원상회복(제33조)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 외 1일당 금 삼십만원(3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제21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며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강제)품목을 자점매입(사입)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각 행위에 대하여 위약벌로 금 이천만(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 여부는 매출액 대비 필수(강제)품목 평균 소요량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뚜렷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과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의 훼손 및 타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뚜렷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78	LHQ	人のコ가	ᄉ᠐비요
구분 합계	내용	소요기간 45일 내외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 홈페이지 및 직접방문	D-45	
1차 상담	- 전화 상담 및 본사방문 상담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4	
점포 개발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Ⅳ.가맹점사업자 의 부담
최종협의	- 개설 승인	D-30	IV.가맹점사업자 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예치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체결	D-29	바랍니다.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D-28	
도면 작성 및 인테리어공사	- 인테리어협의 / 별도 / 추가공사 - 인테리어 공사, 설비공사 실시	D-27~2	
 교육	- 교육(개점전 교육)	D-7~2	
소품 및 초도물품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초도물품공급	D-1~2	
오픈	-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ㆍ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②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③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	ㅇ간판교체 비용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		
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되는 경우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	20%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	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		
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	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 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분담 제외사유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 기간	지원 금액	비고
개점지원	가맹점 오픈지도	가맹점의 매장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오픈일로부터 1~3일간	인력지원에 따른 비용 당사 부담	변동 가능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 부담	비고
가맹 본부 필요시	계약이행, 표준화, 판촉,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계약이행, 표준화, 판촉,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협의 후 개별계약체결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함을 원칙으로 함.	가맹점 부담	문의: 가맹 본부

^{*}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경영지도는 개별 요청사항에 따라 양 당사자의 협의 후 개별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 ∘ 당사는 『거궁찬』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자금지원이나 매출부진에 따른 경영지 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VⅢ.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거궁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점 전 교육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교육	프랜차이즈의 이해, 접객방법, 실습교육, 위생교육, 매장운영 등	이론+실습	오픈 전까지	필수 교육

2) 개점 후 교육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보수 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신메뉴 개발 등
특별 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거궁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5 일	3,300	최초 계약 시 이수 점주숙련도에 따라 변동
수시/보수 교육	1 일(2~4h)	실비 발생 시 청구	필요시
특별 교육	1 일(2~4h)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산정	점주요청에 의한 교육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1인 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1인 이외의다른 직원에 대한 추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인원 추가에 따른 추가 비용을 당사와 협의하여지불하고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지역	명칭	소재지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정보공개서 내용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_2023년도

별첨 2.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별첨 3. 주요 공급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품목은 당사의 가맹사업의 사업전략 변경(메뉴 변경 등 포함) 등으로 인한 상품 변경 및 당사 또는 협력업체의 물류배송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경, 추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별첨 3. 주방설비 필수(강제/권장) 품목 현황

별첨 4. 상품가격 및 판매가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제공확인서

[*주의 : 성명, 수령일시와 수령 장소 등 반드시 자필기재]

가	맹	본	부	㈜거궁찬스					영업	丑又	1	거궁찬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주			소	(거주지)										
제	공	일	시	20	년	월	일	시	제공	공 받 -	은	장 소		
제 사	공	받	은실	정보공개, 라고 작성 작성해주 /	l합니다.	계약서를	제공받은	은 경우 "	정보	공개	서,	가맹기	예약서"를 제공받았습니	다."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가맹희망자의 장례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mark>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mark>(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정보를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점포예정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0 1 1 1 1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v 체크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희망자 :	(인) 또는	ᆡ머
	/ON LL <u>=</u>	ᄲ
// G M G M	(11) 1 =	\sim